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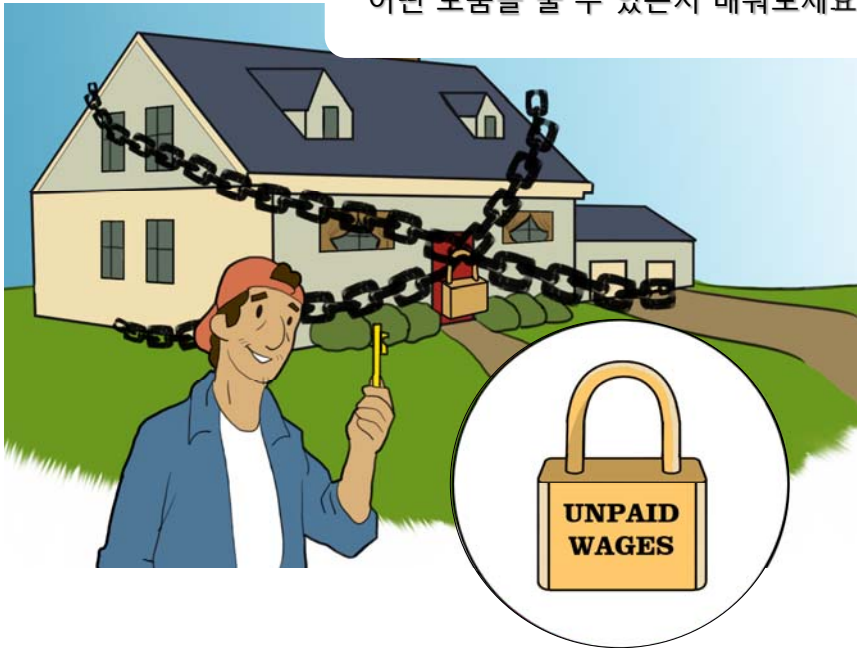
건축 현장에서 일 하시고

돈을 못 받으셨습니까?

(건축, 리모델링, 페인팅, 등)

공사업자 담보권(Mechanic's Lien)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배워보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공사 마지막 날이에요!



드디어 임금을 받았네요!



다음날 집주인 집에 마지막 공사 대금을 받으러 갔더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컨트랙터를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미 컨트랙터에게 돈을 다 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제 문제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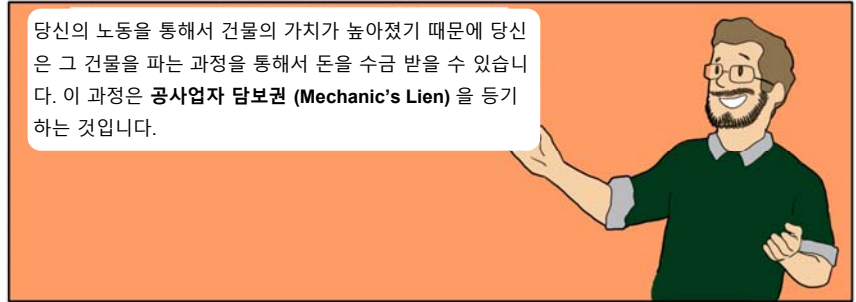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



저희가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수 있나요?

그럼요.



당신의 노동을 통해서 건물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당신은 그 건물을 파는 과정을 통해서 돈을 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공사업자 담보권 (Mechanic's Lien)** 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팔수가 있다고요!?!



네! 하지만 공사업자 담보권을 등기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사업자 담보권을 등기 하면 건물에 자물쇠를 걸어놓는 것 같이 집주인이 건물을 팔거나 재담보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Lien claim이라고 하는 법적 문서를 작성해서 건물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 합니다. 그러면 카운티 등기소의 공식 기록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빨리 등기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업자 담보권 은 공사가 완료된 지 90일이 지나기 전에 등기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적 기한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사업자 담보권을 등기 했다고 알리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만으로도 집주인이나 컨트랙터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업자 담보권을 등기 한 후에도 집주인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자압을 요구하는 소송을 공사업자 담보권이 등기된 후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날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자압소송을 할 수 없고 담보권을 취소해야 됩니다.



공사 대금을 받은 이후에는 담보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겠어요!

